

의안번호	2206343
의 퇴 인	김교홍 의원
회 답 일	2024. 12. 18.
추계번호	24A5842
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2조의2(한국수소기술원의 설립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의 생산·유통·활용 전주기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한국수소기술원(이하 “수소기술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함(제1항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기술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(제3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32조의2 (한국수소기술원의 설립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소의 생산·유통·활용 전주기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한국수소기술원을 설립하도록 하고, 동 수소기술원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2조의2 신설)
-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수소기술원에 출연 또는 보조할 경우 현행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에 대한 지원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법에 근거하여 수소융합얼라이언스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
 - 현행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에 대한 지원과 별도로 개정안의 수소기술원에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다만,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기술원 설립 추진 여부 및 구체적인 기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, 개정안의 지원은 재량지출성 사업으로 법 시행 후 관련 예산 편성에 따라 사업규모가 확정되므로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
- 참고로, 현행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에 대한 주요 재정사업은 다음과 같음

[표 3] 2024년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에 대한 주요 재정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	편성내역	2024예산
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	① 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	3,823
	② 수소산업 통계조사 및 종합정보포털 유지보수	388
	③ 수소경제 사회적 공감대 형성사업	270
	④ 수소국제협력 사업	270
	⑤ 청정수소시험평가 및 실증지원기반구축사업	2,070
수소생산기지구축	① 수전해 공급인프라 구축	6,720
	②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	1,400
계		14,941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서영빈	권아영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서영빈	02-6788-4653	ybin@nabo.go.kr